

비교광고 대폭 허용

-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활성화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을 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당해 심사지침에서는 사업자가 비교광고를 제작할 때 당해 비교광고의 정·부당성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부당성 여부에 대한 자체판단이 어려워 비교광고를 기피해온 사업자의 활발한 비교광고행위를 촉발함으로써 사업자간 또는 제품간의 유용한 비교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업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는 광고행위를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면 이를 부당한 비교광고로서 금지하지 않음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자는 가격만으로, 일정 성능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자는 당해 성능만으로 경쟁사업자와 비교하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동 심사지침은 본지의 '부록' (73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일제조사

공정위는 2000년도 매출액 기준 4,0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납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법 위반혐의가 큰 업체인 11개 백화점 및 8개 할인점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조사를 실시,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관행 및 법 위반혐의를 파악하고, 법 위반혐의가 있는 백화점 및 할인점에 대해 별도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로는 첫째, 백화점·할인점의 이미지 제고 및 판촉을 위한 각종 홍보·행사시 협찬금과 경품비용, 광고비용 등 의 각종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 둘째, 매입단 가의 일방적인 인하, 재고조사 손실분 및 특별판매행사시 부대비용의 전가, 신제품에 별도의 입

점비를 요구하거나 매대비 등을 부과하는 행위, 셋째,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대형유통업체가 고용한 판매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시키는 행위, 넷째, 하도급상품 및 직매입상품의 재고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나 동의 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반품하는 행위, 기타 상품대금의 감액, 상품권의 구입 강요, 서면계약체결의무 준수 여부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등이다.

2001.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1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7월 2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1년 8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3개사가 신규편입되고, 20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1년 9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 회사 수는 2001년 8월 1일의 634개사에서 617개로 감소하였다.

◆ 2001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1. 8. 1.	편 입				제 외						2001. 9.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634	2	1	-	3	1	1	-	16	2	20	△17	617
1~4대	195	-	-	-	0	-	1	-	-	2	3	△3	192
5~30대	439	2	1	-	3	1	-	-	16	-	17	△14	425

◆ 2001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3개사(회사설립 2, 주식취득 1)

◎ 제외 : 20개사(친족분리 16개사, 지분매각 1개사, 합병 1개사, 기타 2개사)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 대 자동차	현대상용차 시스템(주)	상용차에진 제조, 판매	회사설립	(주)현대시스템	통신시스템장비 제조, 판매	분사(하이닉스 반도체자회사)	2
	기아 타이거즈(주)	서비스업	주식취득				
현 대	-	-	-	(주)현대디스플레이 테크놀러지(주)	LCD제조, 판매	"	△2
한 솔	한솔 이엠이(주)	엔지니어링, 환경서비스	회사설립	-	-	-	1

공정위 업무활동

기업 집단	면 입			제 외			증 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삼성	-	-	-	(주)이누카	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업	지분매각	△1
동양	-	-	-	(주)동양 에이치엔알	여신금융업	동양캐피탈 (주)에 합병	
				동양제과(주)	음식료품 제조업	친족분리	
				오리온 프리토레이(주)	"	"	
				동양마트(주)	도소매유통업	"	
				동양레포츠(주)	운동, 경기 및 기타서비스업	"	
				오리온음료(주)	음식료품 제조업	"	
				(주)온미디어	케이블방송업	"	
				(주)투니버스	케이블방송 프로그램공급업	"	
				(주)바둑 텔레비전	"	"	△17
				(주)오리온 시네마네트워크	"	"	
				(주)온케임 네트워크	케이블방송 프로그램공급업	"	
				(주)온뮤직 네트워크	"	"	
				(주)미디어 플렉스	영화상영 및 영화관운영업	"	
				메가박스 씨네플렉스(주)	"	"	
				(주)제미로	인터넷서비스 도소매업	"	
				(주)동구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공급업	"	
				(주)코로또	소프트웨어 개발업	"	
계	3			20			△17